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1. 2.>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 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 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 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 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 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 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 무원,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 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 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	경무관, 소방 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 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 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 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방정 장	학과장(학장보), 교장· 원장, 장학관·교육연구 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 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 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 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장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원감, 장학관·교육연구 관	250,000원
	준위			20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 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 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소 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 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장		180,000원
8·9급(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 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 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 방사		175,000원
	하사			165,000원

비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교장·원장·교감·원감은 월 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제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금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 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 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경무 관, 소방정감·소방감· 소방준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 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 한다)의 학장·처장· 실장·부장, 한국예술중 합학교 원장·처장, 교 장, 장학관·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 도관(4·5급 상당 직위), 5 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 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 원(가급·나급), 국가정보 원 전문관(4·5급 상당 직 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 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 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 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 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 도사, 3·4등급 외무공무 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 경·소방위·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8.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